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399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사경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2205745)	2024. 11. 20.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5.02.18.)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6.03.09.) 상정
	신정훈의원 (2209944)	2025. 4. 18.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5.07.01.)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6.03.09.) 상정
	신정훈의원 (2214643)	2025. 11. 27.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2.05.)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6.03.09.)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03.09.)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3.10.)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동일한 시·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 53조).

나.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제61조의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地方議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를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시·도 및 같은 시·도에 속하는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시·도 관할구역에서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시·도 및 같은 시·도에 속하는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 ⑤ (생략)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各號에 따라 選舉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大統領選舉

政黨 또는 候補者가 設置하되, 選舉事務所 1個所와 市·道 및 區·市·郡(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

③ -----

-----시·도 관할구역에서

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

당 시·도 및 같은 시·도에

속하는 자치구·시·군의 지역

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④ . ⑤ (현행과 같음)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1. 大統領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

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

·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

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마다 選舉連絡所 1個所

2. ~ 5. (생략)

6.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

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自治區·市·郡안에 選舉事務所 1個所. 다만, 自治區가 아닌 區가 設置된 市에 있어서는 選舉事務所를 두지 아니하는 區마다 選舉連絡所 1個所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選舉事務所를 두지 아니하는 國會議員地域區마다 選舉連絡所 1個所를 둘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

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 ~ 5. (현행과 같음)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

